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마약류취급자 개설 또는 폐업 시 마약류 양도·양수 관리 철저 협조요청

- 최근 언론에서 허위 처방전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조제·판매한 사건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마약류취급자의 개설 또는 폐업 시 마약류의 양도·양수 관리 부주의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는 마약류취급자가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는 마약류취급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 당해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의 양도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마약류 양도승인 신청서를 해당 관청에 제출하고, 그 신청은 마약류취급자의 자격이 상실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63조 및 제64조에서는 제13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취급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법 제9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아닌 자로부터 마약류를 양수할 수 없는 바(법 제13조에 따라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 이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취급한 자의 경우 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관할 마약류취급자(의료기관 및 약국)의 개설 또는 폐업 시 마약류취급자가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의 양도·양수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협회에서는 마약류취급자가 동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끝.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보건의료정책과장), 부산광역시장(보건위생담당관), 대전광역시장(보건정책과장), 대구광역시장(보건건강과장), 광주광역시장(건강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장(보건행정과장), 경기도지사(보건정책과장), 경기도지사(보건위생담당관), 충청북도지사(식의약안전과장), 충청남도지사(보건정책과장), 경상북도지사(식품의약과장), 경상남도지사(식품의약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보건건강위생과장), 대한약사회장, 한국병원약사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의사협회장, 대한치과병원협회장, 대한수의사회장, 대한중소병원협회장

약무주사 주민진 사무관 박공수 마약관리과장 김효정 전결 2018.4.24.

협조자

시행 마약관리과-7629 (2018. 4. 24.)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 www.mfds.go.kr

전화번호 043-719-2899 팩스번호 043-719-2890 / redjoo79@korea.kr / 비공개(5)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